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9

제출년월일 : 2010. 9. 13.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의거 안산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통합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 2009. 10. 2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과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맞게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원 연임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을 따르고,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3조의2)

○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함(안 제15조)
  · 이사회 의장 : 사장 →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통합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범위를 새로이 정비함(안 제20조)

○ 市 위탁업무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市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제4항)

○ 공사의 예산편성 기일을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함(안 제24조)
  - (현 행) 사업연도개시 60일전까지
  - (개 정)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 일반회계 예산안 의회 제출기일(40일) 준용

출력자 :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한복수 2010-09-12 13:48

○ 시장은 필요시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 동 조는 기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통합되면서 공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되, 공사 정원의 100분의5 범위안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파견 범위를 추가함.
(안 제38조)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안부) 적용 -

○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변경등기일부터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공단의 재산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공사에 승계함.
(안 부칙 제4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1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반영)

○ 입법예고 기간 : 2010. 8. 14~ 9. 2(20일간)

○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자체검토결과 : 붙임 2

☞ 검토 의견 개정조례안에 반영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3

출력자 :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한복수 2010-09-12 13:48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시장"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시"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제3항중 "대리"를 "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출력자 :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한복수 2010-09-12 13:48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
3.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4. 관광지·리조트,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하천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무역, 외자유치, 투자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해양종합개발사업
9.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10.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11. 주차장, 교통약자지원시설 관리 운영
12.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및 보관, 관리
13. 도시환경, 자원재활용 관리 및 운영
14. 상가, 농수산물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15. 시 소유의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16. 사회공헌사업
1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
18.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사업

제21조 제목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4조 중 "60일"을 "40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력자 :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한복수 2010-09-12 13:48

제38조제1항중 “시소속 공무원”을 “공사 정원의 100분의5의 범위에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변경등기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안산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재산의 승계) 공사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단의 재산가액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5조(예산승인)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단체 또는 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②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비영리법인”을 “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산2담당 정양민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한복수 (행정 2807)

출력자 :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한복수 2010-09-12 13:48

신·구조문대비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
제4조(자본금) ① (생 략) ② 공사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③ ~④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산시(이하 "시" 라한다)---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 ① (생 략)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장) ① (생 략)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11조(사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총괄-- ③ ---------- ----------대행--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3조(감사) ① ---------- ---------- ---. ----------당연직 비상임감사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출력자 :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한복수 2010-09-12 13:4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이사회) ① ~② (생 략) (신 설) ③ 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 ⑥----------비상임이사 ---------- ⑦ ----------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투자 업무 6.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8.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해양종합개발사업 10. 농수산물 유통업무 1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2.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제20조(사업) ----------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 3.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4. 관광지·리조트,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하천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무역, 외자유치, 투자 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해양종합개발사업 9.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10.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11. 주차장, 교통약자지원시설 관리 운영 12.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및 보관, 관리 13. 도시환경, 자원재활용 관리 및 운영 14. 상가, 농수산물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15. 시 소유의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16. 사회공헌사업 1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 18.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사업

출력자 :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한복수 2010-09-12 13: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40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8조(공무원의 파견) ① ---------- ---------- ---------- --------공사 정원의 100분의5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변경등기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안산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출력자 :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한복수 2010-09-12 13: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산의 승계) 공사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단의 재산가액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부속서류 제5조(예산승인)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단체 또는 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②「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비영리법인"을 "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출력자 :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한복수 2010-09-12 13:48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06

제안년월일 : 2010. 9. 28.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공단의 사업범위 중 상가운영 등은 법 관련사업으로 국한하고, 민간영역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공무원의 파견은 공단과 달리 공사는 기업 성격을 가진 기관이므로 최소한도로 운영하도록 조정함.

□ 주요골자

○ 공단의 사업범위 중에서 상가, 농수산물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을 시 소유로 재산으로 제한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삭제하였음.
(안 제20조제14호, 안 제20조제16호)

○ 공무원의 파견범위를 공사 정원의 100분의5의 범위에서 100분의3의 범위로 조정하였음.(안 제38조)

출력자 :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0-10-21 10:23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14호 중 "상가"를 "시 소유의 상가"로 한다.

제20조제16호를 삭제하고 제20조제17호부터 제20조제19호까지를 제20조제16호부터 제20조제18호까지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100분의5의"를 "100분의3의"로 한다.

출력자 :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0-10-21 10:23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 13. (생 략) 14. 상가, 농수산물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15. (생 략) 16. 사회공헌사업 17. ~ 19. (생 략)	제20조(사업)----------. 1. ~ 13. (원안과 같음) 14. 시 소유의 상가,---------- 15. (원안과 같음) <삭 제> 16. ~ 18. (원안 17. ~ 19.와 같음)
제38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사 정원의 100분의5의 범위 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8조(공무원의 파견) ①---------- ---------- ---------- ---------- ----- -100분의3의 ---------- ----------.

출력자 :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0-10-21 10:23